

12.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0-19호 2000. 2. 19

개정취지

소득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를 사용주가 소유하는 주택 또는 사용주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정함.
- 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

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함.

- 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구입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등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하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등을 구입하거나 항공기의 운송용역 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마.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수도권의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중대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거나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그 외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

주택회보